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3. 6. 7.>

유통현황 등의 기록·보관 및 보고의 기준(제6조 관련)

1.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·보관해야 할 사항

구 분	기 록 시 기	보관기간
1. 취급자		5년
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, 수량 및 수출입처	수출입한 때마다	
나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, 수량 및 취득처	취득한 때마다	
다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, 수량 및 판매처	판매한 때마다	
라.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 (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)	발생한 때마다	
마. 처리·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의 종류, 수량 및 처리일시	처리·처분 또는 재활용한 때마다	
바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날짜	조치한 때마다	
사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
2. 등록제조업자		
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, 수량 및 취득처	취득한 때마다	
나. 제조·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의 종류, 모델명, 수량,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	제조·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	
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날짜	조치한 때마다	
라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

2.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

구 분	보 고 기 한
1. 취급자	
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나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다. 공정부산물의 처리·처분 및 재활용 현황	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
라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	매년 1월 31일까지
마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2. 등록제조업자	
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나. 가공제품의 제조·수출입 및 판매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	매년 1월 31일까지
라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